

부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334363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1. B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세영

변론 종결2019. 8. 22.

판결 선고2019. 9. 5.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6,657,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8. 10. 13.까지는 연 6%의, 2018. 10. 14.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9%의, 2019. 1.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은 원고에게 126,657,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8. 10. 13.까지는 연 6%의, 2018. 10. 14.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25.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제1, 2항의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7. 7. 26.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 B이 D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을 장기연체하자, D는 2018.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40,101,773원을 청구하였다가 2018. 7. 25. 외상물품대금이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하였다.

3) 그러나 피고 B이 재차 외상물품대금을 연체하자, D는 2018.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26,225,543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9. 13. D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연체원금 125,438,543원 및 이자 1,218,865원 등 합계 126,657,4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한편, 피고 B은 2018. 7. 25.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910,000,000원에 피고 C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8. 8. 24.에, 잔금 1,610,000,000원은 2018. 9. 14.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8. 9. 14.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피보전채권의 일부인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C 피고 C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 C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D가 2018. 7. 13.경 피고 B의 외상물품대금 장기연체를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미 한차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하였는데, 피고 B이 재차 외상물품대금을 장기연체하여 D가 2018. 8. 29.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여 원고에게 사전구상권이 발생한 이상 가까운 장래에 그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8. 9. 13. D에게 외상물품대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1,9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327,000,000원 상당의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126,657,408원의 구상금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1,320,000,000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최고액 261,600,000원 및 208,8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의 배우자인 H가 2018. 9. 14.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처분등기를, 신용보증기금이 2018. 9. 17. 청구금액 296,0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중소기업은행이 2018. 10. 1. 청구금액 165,060,088원의 가압류등기를 각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가처분 및 가압류등기는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이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의 선의 여부 설사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 을나 제1 내지 10, 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익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 B은 2018. 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I와 J을 통하여 매물로 내놓았고, 피고 C은 주유소 사업 진출을 위하여 2018. 6.경 경매로 나온 주유소 등을 검토하여 오던 중 피고 B이 K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알게 되어 2018. 7. 2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1,910,000,000원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위해 2018. 8.경 진행하였던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금액 1,874,899,620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② 피고 C의 대표이사 L은 주유소 사업을 위하여 2018. 6. 29. 피고 C의 법인등기부의 목적란에 급유소(주유소) 운영업을 추가하여 등기하였고, M기관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2018. 7. 18.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을, 2018. 7. 27. 위험물운송자 자격증을 각 취득하였다.

③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계약 당일인 2018. 7. 25.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8. 8. 24.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지급기일인 2018. 9. 14.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 1,6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이 위 가등기 비용 5,750,000원 중 일부인 2,300,000원을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점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760,000,000원, 근저당권자 N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기일인 2018. 9. 14. 말소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외에 피고 B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C은 2018. 9. 11. 피고 B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인 옥상 점검용 계단을 철거하고 파손된 옥상 점검용 사다리 등을 원상회복하며 이 사건 부동산 내에 방치된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18. 9. 13. 피고 B으로부터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위 철거 및 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기도 하였고, 2018. 11. 19. 피고 B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하자보수를 청구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동건

별지